



제418회국회(임시회)
제7차 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74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6.
3. 회 부 일 : 2024. 9.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스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른바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과 고립·은둔청년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이와 같은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년의 주거지원에 관한 규정은 취약계층 청년의 주거가 자립 및 안전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포함시켜 적극적인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도록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주거지원의 법률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 개정안은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및 제4조제4항).

○ 또한,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u>청년</u> 을 말한다.	5. ----- -----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u> <u>하는 청년</u> 을 ---.
<신설>	가. <u>가족돌봄청년</u> : 부모가 사망·사고·장애·질병·가출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신설>	나. <u>고립·은둔청년</u> : 사회적·경제적·문화적·심리적 원인 등으로

<u><신 설></u> 6.·7. (생 략)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 ⑥ (생 략)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등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③ (생 략)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생 략) <u><신 설></u>	<u>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u> <u>다.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원인으로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u> 6.·7.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제11조(청년 실태조사 등) ① ----- ----- ----- ----- ----- <u>이 경우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실태를 별도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청년 주거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현행 「청년기본법」은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며, 고용촉진 및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최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청년세대 내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 통계청의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5세~64세 전체 고용률은 62.6%, 실업률은 2.7% 수준인 반면, 15세~29세의 고용률은 46.5%, 실업률은 5.9%로 고용 지표면에서 취약하고,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2023년 40.1만 명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음.

1)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10년간 15~29세 쉬었음 인구 수>

(단위: 천명)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75	307	269	299	313	360	448	418	390	401

(자료: 통계청)

○ 또한 국무조정실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2023.3.)」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청년 인구 중 0.6%, 은둔형 청년은 2.4%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취약계층 청년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의 정의를 추가하고,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및 주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취약계층 청년 중 가족돌봄 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임.

○ 청년기의 가족돌봄에 대한 부담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생계비·의료비 등 돌봄비용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부담으로 그 생애가 취약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고, 고립·은둔청년을 방치할 경우 청년의 경제활동 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내용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안 제3조제5호는 취약계층 청년을 ① 부모가 사망·사고·장애·질병·가출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어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인 “가족돌봄청년”, ② 사회적·경제적·문화적·심리적 원인 등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외부와의 교류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인 “고립·은둔청년”, ③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원인으로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정의하려는 것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청년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 다만,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에 두 가지 유형만을 규정하는 것은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청년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해당 유형 외에도 자립준비청년²⁾, 장애가 있는 청년 등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이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의 정의만을 추가할 경우 다른 유형의 취약계층 청년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은 취약계층 청년을 두 유형에 한정하여 나열하는 것은 청년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은

2)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자립이 필요한 청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³⁾ 등과 같이 별도의 법률안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임.

□ 둘째, 안 제4조제4항은 청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려는 것으로, 고립·은둔청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다만, 법 제4조제6항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에 고립·은둔청년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4조제4항은 현행 규정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셋째, 안 제11조제1항은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실태를 별도로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여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3)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06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청년”이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3.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을 말한다.
4. “가족돌봄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본인 및 돌봄대상가족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고립·은둔청년”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한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곤란한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 위한 취지임.

- 현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청년 실태조사에도 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에 관한 사항이 포함⁴⁾되어 있으나, 현행법령상 취약계층 청년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됨.

□ 넷째, 안 제20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 여건 조성 및 안전한 주거 환경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⁵⁾을 추진하고 있고, 취약계층 청년의 고용 및 금융생활에 대한 지원 규정⁶⁾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국무조정실은 현재도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법상 취약계층 청년의 범위가 넓어 이에 대한 주거지원 시 불필요한 자원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4)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첫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종합적 조사로 청년 삶 개선·발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2023.3.6.)에 따르면, 은둔청년(임신·출산·장애 제외)은 2.4%, 가족돌봄청년은 0.6% 수준으로 공표됨.

5)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출자(2024년 5,288억원)’, ‘행복주택융자(2024년 8,383억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2024년 104억원)’,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보호종료아동) 지원(2024년 454억원)’ 등

6) 「청년기본법」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한편, 취약계층 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안으로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⁷⁾이 우리 위원회에,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⁸⁾,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⁹⁾,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¹⁰⁾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제정안이 의결될 경우 취약계층 청년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기본법」을 별도로 개정할 실익이 적으므로, 법률안 심사 시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13

7)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603호
 8)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944호
 9)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064호
 10)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436호